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5. 4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4월 19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4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마련(녹지지역내 기존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기준 및 제외지역 기준을 정함)
2)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 및 밀도를 정함
3)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정함
4)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과 도시기반시설이 설치 되도록 지구의 정비기준을 정함
5)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현수)

○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가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령 제62조 제1항 제16호 내지 18호가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퍼센트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완화함에 따라 동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해당 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